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32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8. 11.
판 결 선 고	2021.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5.[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의 2020. 5. 7.자 '당사자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중 '정정후 청구취지' 제1항에 기재된 '2018. 1. 8.'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9. 9. 27. 설립되어 1961. 11. 30.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1962. 7. 14. 법률 제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위 법은 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되었다) 제3, 4조에 따라 당시의 [redacted] 장관으로부터 사회단체등록허가를 받아 등록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 B 토지 지상 재실 건축물(이하 '이 사건 재실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재실 건물 부속 토지 등 25개 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재실 건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 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2]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년경 원고의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한 과세형태 점검을 한 뒤, 원고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3]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그

2)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중 여러 차례 위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별도로 개정경과를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3) C 토지는 분리과세방식에서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등에서 원고가 같은 기간 이미 납부한 재산세 등을 공제한 재산세 등 합계 61,000,970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2. 이 사건 각 토지 중 D, E, F, G, H, I의 현황이 임야이므로 위 각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과되었던 재산세 등을 감액하였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에서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구체적인 세액 내역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이와 같이 감액된 2018. 1. 1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가 정한 장학단체인데, 원고의 정관에는 '선현의 분묘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는 모두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실 선물 및 각 토지는 모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실 건물은 선현을 모시기 위한 재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선조들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선산으로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선현의 분묘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이 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해석 등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4]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5] 제2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 12. 31.까지 면제하게 되어있다(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호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① 면제조항이 장학단체 등 공공법인에 대해 일정한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장학사업 등의 공익적 · 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10318 판결,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

4) 이 사건 각 처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해당 연도에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 2항은 재산세 등의 면제 시기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모두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 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역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행된 것이 적용되나, 같은 기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22조 제1호는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정 참조), ② 면제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고유업무는 장학단체 등이 사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만일 장학단체 등이 공공법인으로서의 고유업무 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다른 목적사업도 법인등기부에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모든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면 장학단체가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사업을 등기하고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거나 재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 설립, 운용되는 폐단을 막기 어려운 점, ④ 그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 1. 15. 제45조를 개정하여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면제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장학단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정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그 법인의 본질적인 속성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 즉 학자금 · 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 · 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 ·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 · 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정한 장학단체인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이다(피고의 2019. 1. 29.자 준비서면).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과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가 이 사건 면제조항이 정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고,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면제조항은 해당 부동산이 각 그 고유업무에 실제 사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면제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는 J씨 종중과 관련하여 '선현의 분묘수호와 향사에 관한 일'이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정관 제4조 (1)항 참조]. 그런데 원고의 고유목적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법의 규정에 따라 J씨의 종중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선현의 유적을 보존 관리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정관 제1조 참조), 이중 장학사업의 성격을 갖는 목적사업은 인재 양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위 선현의 분묘수호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 그러한 인재 양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건 면제조항이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러나 분묘가 설치되어 선산으로 사용되거나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는 모두 그 부동산 자체가 J씨 종중이라는 특정 단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J씨 종중의 분묘를 수호하고 해당 종중의 공동선조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만으로 장학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따라서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재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 및 각 토지를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학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가 적용되어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별지1

재산세(건축물) 과세내역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 상 목조 94.5㎡ 재실 건축물

[단위: 원]

귀속년도	과세표준			산출내역	
				산출세액	추가세액
2013년	재산세	건축물분	8,202,600	20,500	20,500
		도시지역분	8,202,600	11,480	11,480
	지역자원시설세		8,202,600	3,500	3,500
	지방교육세		20,500	4,100	4,100
	계			39,580	39,580
2014년	재산세	건축물분	8,202,600	20,500	20,500
		도시지역분	8,202,600	11,480	11,480
	지역자원시설세		8,202,600	3,500	3,500
	지방교육세		20,500	4,100	4,100
	계			39,580	39,580
2015년	재산세	건축물분	7,673,400	19,180	19,180
		도시지역분	7,673,400	10,740	10,740
	지역자원시설세		7,673,400	3,230	3,230
	지방교육세		19,180	3,830	3,830
	계			36,980	36,9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귀속년도	과세표준			산출내역	
				산출세액	추가세액
2016년	재산세	건축물분	7,607,250	19,010	19,010
		도시지역분	7,607,250	10,650	10,650
	지역자원시설세		7,607,250	3,200	3,200
	지방교육세		19,010	3,800	3,800
	계			36,660	36,660
2017년	재산세	건축물분	6,945,750	17,360	17,360
		도시지역분	6,945,750	9,720	9,720
	지역자원시설세		6,945,750	2,870	2,870
	지방교육세		17,360	3,470	3,470
	계			33,420	33,4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별지2

재산세 필지별 추징내역 (2013년 ~ 2017년)

연번	세부내역	공부지목	현황지목	과세구분		과세물	2013년도		
				당초	변경		토지내역	교육세액	합계세액
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086,409	267,081	1,642,480
2	동	임야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6,459	691	4,160
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15,699	42,719	266,618
4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1,170	16,233	97,408
5	동	전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6,662	2,712	16,274
6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16,621	68,169	678,954
7	동	종교용	대지	감면	별도합산과세		248,579	61,014	279,892
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838,888	668,727	2,182,860
9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6,964)	(1,279)	(7,657)
10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1,885	18,617	109,902
11	동	전	잡종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9,800	19,860	119,160
12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17,897	23,579	141,476
13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8,208)	(7,642)	(45,850)
14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7,827)	(1,565)	(9,392)
15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414)	(689)	(4,097)
16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4,480)	(897)	(5,377)
17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457)	(1,698)	(10,155)
1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	487,276	97,455	584,731
19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09,276	161,855	971,130
20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도	1,684,423	316,884	1,901,307
2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225,999	445,199	2,671,198
22	동	임야	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기	70,661	14,132	84,793
2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66,181	11,228	67,357
24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재	-	-	-
25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6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7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8	동	대지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9	동	임야	도로	분리과세	비과세		(15,761)	(2,762)	(18,519)
30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19,405)	(3,882)	(26,287)
31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2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694,289	78,857	473,146
33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90,709	28,141	168,850
34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5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6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7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합계							9,946,180	1,970,463	11,916,64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연번	세부내역	공부지목	현황지목	과세구분 당초	과세구분 변경	과세율	2014년도 토지세액	2014년도 교육세액	2014년도 합계세액
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288,558	257,313	1,545,879
2	동	임야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460	691	4,151
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13,979	42,676	256,655
4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0,744	16,148	96,892
5	동	전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548	2,709	16,257
6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17,222	63,444	380,666
7	동	종교용	대지	감면	별도합산과세		247,408	30,814	278,222
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882,737	376,547	2,271,284
9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6,352)	(1,270)	(7,622)
10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1,475	18,294	109,769
11	동	전	잡종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9,296	19,859	119,154
12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17,318	23,463	140,781
13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8,050)	(7,611)	(45,661)
14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7,827)	(1,565)	(9,392)
15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414)	(683)	(4,097)
16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4,450)	(867)	(5,317)
17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467)	(1,698)	(10,165)
1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	485,621	97,104	582,725
19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11,517	162,303	973,820
20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도	1,648,964	329,797	1,978,761
2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318,396	463,679	2,782,075
22	동	임야	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기	69,542	15,908	85,450
2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56,074	11,214	67,288
24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재	-	-	-
25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26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7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8	동	대지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9	동	임야	도로	분리과세	비과세		(14,100)	(2,824)	(16,948)
30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19,915)	(3,984)	(23,899)
31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2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95,538	79,107	474,645
33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6,517	27,306	163,823
34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5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6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7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합계							10,182,644	2,017,852	12,200,49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연번	세부내역	공부지목	현황지목	과세구분		과세율	2015년도		
				당초	변경		토지세액	교육세액	합계세액
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285,212	257,042	1,542,254
2	동	임야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360	672	4,032
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08,753	41,750	250,503
4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0,618	16,123	96,741
5	동	전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255	2,651	15,906
6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00,583	60,116	360,699
7	동	종교용	대지	감면	별도합산과세		247,157	30,779	277,936
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852,658	370,532	2,223,191
9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6,329)	(1,266)	(7,595)
10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1,104	18,221	109,325
11	동	전	잡종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7,107	19,421	116,528
12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17,159	23,427	140,586
13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7,893)	(7,579)	(45,472)
14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106)	(1,622)	(9,728)
15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508)	(702)	(4,210)
16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4,587)	(918)	(5,505)
17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829)	(1,766)	(10,595)
1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	483,251	96,650	579,901
19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784,960	156,992	941,952
20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도	1,614,067	322,813	1,936,880
2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268,324	453,664	2,721,988
22	동	임야	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기	69,324	13,864	83,188
2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54,657	10,971	65,628
24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재	-	-	-
25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6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7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8	동	대지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9	동	임야	도로	분리과세	비과세		(14,556)	(2,911)	(17,467)
30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20,527)	(4,106)	(24,633)
31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2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93,334	78,666	472,000
33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5,914	27,182	163,096
34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5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6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7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합계							9,996,635	1,980,663	11,977,29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연번	세부내역	공부지목	현황지목	과세구분		과세율	2016년도		
				당초	변경		토지세액	교육세액	합계세액
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10,485	262,096	1,572,581
2	동	임야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316	663	3,979
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02,149	40,429	242,578
4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0,419	16,083	96,502
5	동	전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2,835	2,566	15,401
6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01,257	60,251	361,508
7	동	종교용	대지	감면	별도합산과세		246,547	30,696	277,243
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794,016	356,803	2,150,821
9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6,169)	(1,234)	(7,403)
10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8,748	17,750	106,498
11	동	전	잡종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6,214	19,242	115,456
12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16,854	23,370	140,224
13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6,945)	(7,390)	(44,335)
14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430)	(1,687)	(10,117)
15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677)	(788)	(4,413)
16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4,770)	(955)	(5,725)
17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9,170)	(1,834)	(11,004)
1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	470,725	94,145	564,870
19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776,676	155,674	932,350
20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도	1,562,978	312,695	1,875,673
2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197,194	439,439	2,636,633
22	동	임야	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기	68,574	13,774	82,348
2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53,122	10,624	63,746
24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재	-	-	-
25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6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7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8	동	대지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9	동	임야	도로	분리과세	비과세		(14,744)	(2,949)	(17,693)
30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20,792)	(4,158)	(24,950)
31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2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84,712	76,942	461,654
33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6,385	27,276	163,661
34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5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6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7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합계							9,799,011	1,941,177	11,740,18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연번	세부내역		공부지목	현황지목	과세구분		과세율	2017년도		
					당초	변경		토지세액	교육세액	합계세액
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10,078	262,015	1,572,093
2	동		임야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377	675	4,052
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98,258	39,651	237,909
4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1,487	16,293	97,780
5	동		전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2,588	2,517	15,105
6	동		대지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00,909	60,181	361,090
7	동		종교용	대지	감면	별도합산과세		250,471	61,332	281,703
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759,725	351,945	2,111,670
9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6,169)	(1,234)	(7,403)
10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8,721	17,744	106,465
11	동		전	잡종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94,369	18,874	113,243
12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18,391	23,678	142,069
13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6,945)	(7,390)	(44,335)
14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8,755)	(1,752)	(10,507)
15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3,819)	(764)	(4,583)
16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4,953)	(991)	(5,944)
17	동		전	전	분리과세	분리과세		(9,511)	(1,902)	(11,413)
18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별	470,579	94,115	564,694
19	동		대지	대지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776,695	155,326	931,961
20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도	1,593,102	306,620	1,899,722
21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2,154,540	430,906	2,585,446
22	동		임야	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기	71,671	14,374	86,045
23	동		전	전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82,100	16,419	82,519
24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재	-	-	-
25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6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7	동		도로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8	동		대지	도로	비과세	비과세		-	-	-
29	동		임야	도로	분리과세	비과세		(15,105)	(3,021)	(18,126)
30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21,302)	(4,261)	(25,563)
31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2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384,592	76,918	461,510
33	동		답	답	분리과세	종합합산과세		133,104	26,621	159,725
34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5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6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37	동		임야	임야	분리과세	분리과세		-	-	-
합계								9,688,318	1,918,791	11,607,10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별지3

관계 법령

■ 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1962. 7. 14. 법률 제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

제2조 (사회단체의 정의)

① 본법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정치성이 없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및 종교단체, 근로단체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를 얻은 단체를 말한다.

② 전항의 구호단체라 함은 국민보건, 후생 및 원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의 학술단체라 함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등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④ 제1항의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자의 교화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단, 교회, 사원 기타 포교의 단위는 종교단체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근로단체라 함은 근로자가 자립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 제1항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허가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반공정신을 선양, 계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신생활과 국민도의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국제적인 뉴대를 가진 민간외교단체
4. 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3조 (등록절차)

전조의 단체는 별표서식 제1호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단체에 관한 주무부장관은 공보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등록의 심사)

주무부장관이 전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회단체의 구성원의 신원, 사업, 목적의 사회공익성 또는 건전성 기타 정황을 심사하여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끝.